



마 포 구

새로운 마포
더 나은 마포

수신 주식회사 범양플로이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 알림(주식회사 범양플로이, 신수동 88-9)

귀사에서 제출한 특정공사 변경신고서를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리하고
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.

□ 변경신고 내역

신고 번호	사업장명	시공사	소재지	변경 내용			비고
			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
2024-85	신수동 88-9 대수선공사	주식회사 범양플로이	신수동 88-9	공사기간	2024. 8. 26. ~ 2024. 12. 31.	2024. 8. 26. ~ 2025. 2. 28.	

붙임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1부. 끝.

마 포 구



주무관

송영중

맑은환경과장

2024. 12. 31.
문광택

협조자

시행 맑은환경과-47505

(2024. 12. 31.)

접수

우 03937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, 마포구청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
(성산동)

/ <http://www.mapo.go.kr>

전화번호 02-3153-9275

팩스번호 02-3153-9299

/ nboy1102@mapo.go.kr

/ 비공개(7)

신고번호		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		
제3130000-2024-00085호				
신고인	①상호(사업장명)	주식회사 범양플로이	② 전화번호	010-4081-3316
	③성명(대표자)	김영택		
④공사명칭		신수동 88-9 대수선공사		
⑤공사장소재지		마포구 신수동 88-9		
⑥특정기계·장비의 명칭, 형식 및 대수		장비명	형식	
		굴착기	3대	
		압쇄기	1대	
		콘크리트 절단기	1대	
		브레이커	1대	
		콘크리트 펌프	1대	
⑦공사실시기간		2024년08월26일 ~ 2025년02월28일 까지 (187)일간		
		작업개시	작업종료	실제작업일수
		08시00분	18시00분	128 일간
⑧소음·진동방지방법		순서	방지방법	
		1	· 소음진동규제준수	
		2	· 저소음건설기계사용	
		3	· RPP방음벽(3M×58M) 설치	
		4	· 건설기계사용기간및시간준수	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2024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				

<변경사항>

현장책임자: 이영석

현장책임자연락처: 010-4081-3316

일	자	내	용	확	인
2024	12	31	· 공사기간 연장(2024.8.26. ~ 2024.12.31. → 2024.8.26. ~ 2025.2.28.)	송영중	

- ※ 공사시행시 주의사항
- 1. 소음·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(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등을 받게 됩니다).
 - 2. 소음·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시에 제시한 방음시설설치 등 소음·진동저감 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.
 - 3. (변경)신고한 기계·장비 외의 특정기계·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 - 4.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 - 5. 저소음 건설기계·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,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.
 - 6. 건설기계·장비의 운전·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·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 - 7. 건설기계·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